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기반 매체

일 시 : 2010년 4월 9일(금) 10:30 ~ 12:30

장 소 :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5층 대연회장)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지방토론회 주제논문집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기반 매체

일 시 : 2010년 4월 9일(금) 10:30 ~ 12:30

장 소 :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5층 대연회장)

・이 책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은 당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토론회 순서

▶.....

10:30~10:40 **개회 및 국민의례**

▶.....

10:40~11:30 **주제발표**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기반 매체
발 표 - 이 동 근 광주중재부 중재위원

▶.....

11:30~12:20 **토론**
사 회 - 김 병 하 중재부장

▶.....

12:20~12:30 **토론 총평**
총 평 - 권 성 위원장

▶.....

12:30~13:30 **오찬 및 간담**

▶.....

주제논문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기반 매체

이 동 근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광주중재부 중재위원)

목 차

1. 서 론 ····· 1

2. 언론중재위원회 ····· 2

3. 인터넷기반 매체 ····· 3

4.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 뉴스서비스 ····· 5

5. 개정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 7

1) 중재 대상 범위의 확대 ····· 8

2)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의무 ····· 9

3) 일괄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 9

6.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현황과 향후 과제 ····· 10

1) 현 황 ····· 10

2) 향후 과제 ····· 11

7. 결 어 ·····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7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기반 매체

이 동 근

광주중재부 중재위원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서 론

언론의 자유는 인간이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1] 그런데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 개념이 상정하는 전형적인 가해자는 국가권력, 전제왕권 등이었고, 언론자유의 실질적인 의미는 국가권력, 전제왕권이 행하는 공적 검열로부터의 자유였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 · 성숙하면서 오늘날 일부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드러내 놓고 무지막지하게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7년 6월항쟁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이룩되어 언론의 자유가 급신장하였다. 언론이 현직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등,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언론기관 자체가 시민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들이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 국가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던 시절, 피해자인 일반시민은 언론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국가권력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였지만, 오늘날 시민들은 언론기관이라는 새로운 가해자와 상대하게 된 셈이다.[2] 이런 상황에서는 언론기관의 자유와 전통적인 언론의 자유를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즉,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언론자유의 주체도 궁극적으로 국민일진대, 언론기관이 주장하는 '언론자유'로 인해 정작 주체인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을 개인존중이라는 인권은 서로 끊임없이 충돌하는 모순관계에 있다. 그리고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수반되는 것처럼, 특히 언론의

1)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1조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2) 박형상, 언론으로부터의 자유와 법적 대응,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 (김동민 편저, 한나래, 1993) pp.193-213.

자유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언론기관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피해 사항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1981년에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터넷의 대중화로 사회적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인터넷기반 매체로 인한 언론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 발효된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의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언론중재위원회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12월 31일 언론기본법(제50조)을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됨으로써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언론중재제도의 법적 근거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 또는 「방송법」의 일부로 흡수되었다가 1995년 정간법의 개정 등으로 그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한편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단일법의 제정이 절실하다는 점증하는 여론이 받아들여져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언론기본법은 1980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집권에 성공한 후 그들의 정치권력 강화와 언론통제를 위해 계엄령 하에서, 해산된 국회를 대신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소위 개혁입법의 하나로 제정된 규제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1987년까지만 해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언론인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정간법 혹은 방송법 일부로 흡수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3] 1987년 6월항쟁 이후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다양한 언론매체들 간의 과열경쟁으로 언론이 상업성에 치우쳐 과장 · 선정 · 폭로 보도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자 언론인 자신들이 자정의 일환으로 중재제도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언론중재위원

3) 서정우,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향, 『언론중재』, 1989년 겨울호, p.48.

회의 해결에 만족하기 시작하였다.[4]

원래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언론사와의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빠른 시일 내에 반론보도, 정정보도 등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자는 데 있으며,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손해배상을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 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분쟁해결은 조정 또는 중재로 이루어진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재"는 당사자가 분쟁에 대한 판단을 중재부에 맡기기로 합의하고, 중재부의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5] 언론중재제도는 분쟁의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해에 의한 명예로운 해결의 기회를 부여하고,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부는 직업법관 이외에도 언론계의 실정에 정통한 위원이라든가 독자층의 이익을 대변할 각계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어 언론과 피해자 쌍방을 이해시키는 데 유리하고, 언론사 측의 입장에서는 곧바로 제소되기 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절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이나 소송절차상 번잡함이 없이 손쉽게 피해의 구제가 가능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6]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의 청구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7] 다시 말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칠지 말지는 피해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다.

3. 인터넷기반 매체

최근 수십 년간 전자 ·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등장할 때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내용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내용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초래하였다. 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이제까지 사용되어 왔던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선 기술을 일컫는다. 사람이

---

4) 한병구, 『언론과 윤리법제』(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p.385-386.

5) 언론중재법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6) 박용상, 정정보도 청구권 및 언론중재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언론중재』, 1991년 가을호, p.21.

7) 언론중재법 제26조(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일일이 손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외에 별도의 방법이 없었던 시절에 등장한 인쇄기술은 뉴 테크놀로지이며, 라디오가 지배적인 매체였던 시절에 텔레비전은 뉴 테크놀로지이며, 흑백 텔레비전 시절에 새롭게 등장한 컬러 텔레비전은 뉴 테크놀로지이며, 지상파 방송만이 유일한 전파 송신기술이었던 시절에 유선방송, 그리고 위성방송은 뉴 테크놀로지이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간으로만 청취하거나 시청하던 시절에 녹음기나 VTR의 등장은 뉴 테크놀로지로 간주되었다. 그동안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큰 기대를 걸곤 하였다. 이는 뉴 테크놀로지의 기술적 특성이 기존의 테크놀로지의 단점을 보완해 결국 인류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 것이다.

그동안 등장했던 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비해 여러 차원에서 매우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인터넷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희망을 심어 주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월드와이드웹(WWW)의 등장과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해 인터넷은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이용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정치학자인 드 솔라 풀(de Sola Pool)은 말하기와 글쓰기, 인쇄, 방송에 이어 인터넷을 인류의 커뮤니케이션 발달 과정 중 네 번째 단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8]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인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상호작용성, 다른 사이트나 다른 문서로 손쉽게 연결이 가능한 하이퍼텍스트(Hypertext)성, 정보의 빠른 업데이트 능력, 송수신상의 물리적 거리나 시간적 제약의 극복, 문자 · 음성 ·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성 등은 특히 저널리즘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여론과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와 제16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인터넷기반 매체가 사회적으로 급부상하였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 중 하나인 『뉴욕 타임스』는 2003년 3월 6일자 기사에서, 인터넷신문이 한국의 정치를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주한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두 여중생에 관한 뉴스가 당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터넷신문으로 알려진 『오마이뉴스』에 보도되면서 주한미군 반대 시위로 불거진 국민운동에 힘입어 한국의 정치 기준으로는 젊은 층에 속하는 56세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며 인터넷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보도했다.[9]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듯이 인터넷이라는 뉴 테크놀로지도 그

---

8) de Sola Pool, Ithiel (1990). Technologies without Boundaries, (Ed.). by E. M. Noa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 7.

9) French, H. W. (2003. March 6). Online Newspaper Shakes Up Korean Politics, The New York Times, Section A, p. 3.

단점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저널리즘에 악영향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마치 원자력 기술을 질병 치료에 이용하면 인류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게 되지만, 전쟁에서 대량살상 무기로 사용될 경우 인류의 멸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최근 몇몇 인기 연예인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온 자신들에 관한 악의적인 글들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자살한 사건들이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저널리즘과 관련하여 인터넷기반 매체는 이른바 게이트키핑 기능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손쉽게 올린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함량 미달인 기사들이 인터넷상에서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해악은 심대하다.

인터넷의 급속한 대중화로,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신문과 방송 등 이른바 오프라인 매체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고 그 대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매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조정대상 언론사에 포함시켰다. 2005년 7월, 언론중재법과 함께 본격 시행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서 인터넷신문이 정식 언론으로 규정됨으로써 전통적인 언론매체와 대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10] 현재 우리나라에는 오프라인상에서는 언론활동을 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만 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신문사들이 등록된 것만도 1,700여 개나 된다.[11]

4.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온라인 저널리즘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오프라인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미디어로서 온라인 독자층만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신문이다. 오프라인상의 어떤 매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독립형 온라인 미디어라고도 부르는데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신문으로는 마이데일리 (http://www.mydaily.co.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등이 있다.

둘째, 기존 오프라인 매체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언론사닷컴으로서,

---

10) 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시사 등에 관한 보도 · 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11) 출처: http://mediasis.kpf.or.kr/mediaDirectory/list.asp · fLoad=1 [접속일: 2010. 3. 22]

오프라인 매체에 종속되었다고 해서 종속형 온라인 미디어라고도 부른다. 1992년 미국의 일간지인 『시카고 트리뷴』이 세계 최초로 웹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언론사닷컴으로는 1995년 『중앙일보』가 국내 최초로 발간한 조인스닷컴 (http://www.joins.com), 『조선일보』의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한국일보』의 한국i닷컴 (http://www.hankooki.com) 등이 있다.[12]

셋째, 검색엔진이나 포털사이트가 기존 미디어 뉴스를 그대로 혹은 편집하여 전달하는 재매개 저널리즘(re-mediated journalism)으로서 인터넷 뉴스서비스 혹은 인터넷포털사(이하 '인터넷포털사'라 칭함)가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포털사로는 네이버 (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 네이트 (http://www.nate.com) 등이 있다.[13]

그밖에 인터넷 게시판이나 토론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 자체도 온라인 저널리즘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를 읽는다. 또한 컴퓨터를 활용한 취재보도나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한 취재보도 자체도 넓은 의미의 온라인 저널리즘으로 분류한다. 즉, 취재 보도시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인터넷 인물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혹은 이메일을 통한 외국 취재원과의 인터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005년에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오프라인상에서는 기사제공 서비스를 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만 뉴스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신문의 뉴스 기사에 대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제정되었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인터넷포털사와 언론사닷컴이 제공하는 기사는 정정보도 등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했었다. 그런데 언론사닷컴과 인터넷포털사[14]와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스 서비스는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급속하고 광

---

12) 출처: http://www.rankey.com/rank/rank_site_cate.php?cat1_id=6&cat2_id=83&cat3_id=495 [접속일: 2010. 3. 22]

13) 출처: http://www.rankey.com/rank/rank_site_cate.php?cat1_id=22&cat2_id=227&cat3_id=1215 [접속일: 2010. 3. 22]

14) 온라인 저널리즘의 유형 중 재매개 저널리즘에 속하는 포털(portal)이란 원래 '입구, 현관, 정문'이란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을 시작하면 거치게 되는 첫 관문이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포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원래 검색 기능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전자메일, 홈쇼핑, 블로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과 제16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포털사의 뉴스 서비스 분야 진출이 가속화되어 기존 오프라인 매체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전문적으로 뉴스를 제공하던 인터넷신문과 언론사닷컴 등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11월 <다음>은 임시조직이었던 미디어팀을 미디어본부로 승격하고 중앙일간지 기자 출신을 본부장으로 영입하여 2003년 3월 <미디어 다음>이라는 뉴스전문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계속해서 <야후> <네이버> <엠파스> 등 여타 인터넷포털사들도 자사의 뉴스부문 인력을 확충하고 제휴언론사 확대 등을 통해 미디어 사이트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상반기 이후 포털사이트 뉴스채널의 순 방문자수가 언론사닷컴의 방문자수를 본격적으로 앞지르게 되었다.

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급증하였다.[15] 예를 들어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 일일 방문자수가 각 각 1천만 명을 넘는 등 인터넷포털사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다. 특히 스스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고 이미 타사가 제작한 정보를 전달만 하는 재매개 저널리즘(remediated journalism)인 인터넷포털사의 경우는 자체 제작 사업자에 비해 정보의 내용과 질을 검증하는 품질관리 과정이 구조적으로 미흡하다. 인터넷에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들은 많게는 100개 이상의 언론사에서 기사를 공급받아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에서 주된 뉴스 유통창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터넷포털사가 제공하는 뉴스에 의한 피해의 구제 방안에 대한 비등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정 언론중재법이 2009년 8월 7일, 법률 제9425호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정 언론중재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만 누리고 법적 책임은 없었던 인터넷포털사를 언론 관련 법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포털사뿐 아니라 IPTV (Internet Protocol TV), 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중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부터 이미 인터넷을 이용하여 방송 및 기타 콘텐츠를 텔레비전 수상기에 제공하는 IPTV 시대로 접어든 바 있으며 앞으로 주요 뉴스 매체로 사회에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16]

5. 개정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개정 언론중재법 중에서 인터넷기반 매체와 관련된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

---

15) 2008년 한 해 동안 인터넷 이용자 중 77.3%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했으며 이 중 70.5%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현(2008. 10.16), 최구식 "신문구독률, 인터넷뉴스 이용률의 절반도 안 돼". 『뷰스앤뉴스』.[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1540 접속일: 2010. 3. 22]

16) IP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영화 · 방송 프로그램 등 동영상 콘텐츠와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양방향 방송 · 통신 음향 서비스다. 시청자가 원하는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선택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과 다르다. IPTV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과 셋톱박스 또는 전용모뎀, 인터넷 회선만 연결돼 있으면 된다. IPTV를 통해 리모컨만으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영화감상, 홈쇼핑, 홈뱅킹, 온라인 게임 등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IPTV는 현재 KT(메가TV), SK브로

저, 중재 대상 범위의 확대로서 인터넷포털사, 언론사닷컴, IPTV 등이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의무가 인터넷 매체에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인터넷포털사와 기사제공 언론사와의 관계에 관한 특칙을 두어 일괄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1) 중재 대상 범위의 확대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신문의 기사에 대한 정정, 반론, 추후보도 청구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피해자는 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이나 중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신문뿐 아니라 언론사닷컴과 인터넷포털사, 그리고 IPTV의 기사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에 따라 언론사닷컴도 인터넷신문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포털사와 IPTV는 법률적으로 '언론'의 지위를 확보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여전히 법 제2조1호는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인터넷 뉴스서비스에서 제외시켰다. 즉,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친목이나 교육 · 종교 목적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 등은 개정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17] 한편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에서 서비스 중인 기사에 대해서 별도의 정정보도가 아닌 '해당기사 자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에서 서비스 중인 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거나, 해당 기사 밑에 정정보도문을 덧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게시 중인 기사 자체를 수정하여 달라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드밴드(舊 하나로텔레콤 하나TV), LG데이콤(my LGtv)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 중 KT는 2008년 11월부터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으며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은 2009년 1월 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다. 출처: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rkb06l0049 [접속일: 2010. 3. 22]

17)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의무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뿐만 아니라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5조 제8항). 보관의 범위나 방법 등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무엇을 보관하는가와 관련하여, 우선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해당 인터넷신문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를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포털사는 해당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를 보관해야 하며, 해당 인터넷포털사가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단계 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를 보관하여야 한다. 여기서 연결단계 구조의 최상위 화면이란, 해당 사이트의 메인 화면([그림1] 참조)에서 '뉴스' 항목을 클릭하여,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단계 구조의 최상위 화면, 즉 뉴스면의 메인 페이지([그림2] 참조)를 말한다. 한편 개정 언론중재법은 영세한 인터넷 매체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전년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하인 인터넷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포털사는 배열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정했다.

3) 일괄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인터넷포털사 등 인터넷기반 매체로 인한 피해는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의 구제는 신속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의 빠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언론중재법은 표시의무와 통보의무 등 특별한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⑴ 인터넷포털사의 표시 및 통보 의무

개정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인터넷포털사가 정정 반론 추후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7조의2 제1항).

⑵ 동일 청구 간주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통보가 있기만 하면 해당 언론사(생산자) 역시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법 제17조의2 제2항).

② 피해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가 아닌 기사 생산자(언론사)에게 먼저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기사 생산자가 정정 보도를 하기로 결정하면 기사 생산자는 그러한 사실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17조의2 제3항).

6.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현황과 향후 과제

1) 현 황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2009년 8월 7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청구 건수는 총 1,427건이었고, 그 중에서 인터넷신문이 230건으로 총 조정 청구 건수의 16.1%를, 언론사닷컴과 인터넷포털사가 무려 444건으로 총 조정 청구 건수의 31.1%를 차지하였다. 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체를 제외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스서비스(인터넷신문, 언론사닷컴, 인터넷포털사)가 전체 조정 청구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7.2%를 차지한 것이다.

동 기간 중 조정이 성립된 총 360건 중, 인터넷신문의 조정성립 건수가 94건으로서 총 조정성립 건수의 26.1%를 차지하였고, 언론사닷컴과 인터넷포털사의 조정성립 건수는 53건으로 총 조정성립 건수의 14.7%였다. 인터넷신문, 언론사닷컴, 인터넷포털사 등 이른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스서비스의 조정성립 건수가 전체 조정성립 건수의 40.8%를 차지한 셈이다.[18]

요컨대,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의 조정 청구 및 조정 성립 건수가 각각 전체 매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방송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는 '방송' 매체와 관련된 기관에 국한해야 하므로, 그동안 주로 인쇄매체를 다루어 왔던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던 예산 당국의 이제까지의 주장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청구 건수 및 조정 성립 건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다시 말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

18) 보다 자세한 처리현황은 <표1>의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이후 매체 유형별 조정신청 처리현황' 참조.

을 수 있는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이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19]

2) 향후 과제

⑴ 법률적으로 '언론'으로서의 지위 부과 문제

개정 언론중재법은 여전히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20]"으로 한정하고 있다(법 제2조1호).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언론사닷컴을 인터넷신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언론중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인터넷포털사와 IPTV는 법률적으로 '언론'의 지위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즉 개정 언론중재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여전히 인터넷포털사와 IPTV의 법적 개념은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셈이다.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법 규정 내에 포함되어야 인터넷을 통한 뉴스 서비스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공백 없이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⑵ 배열기록 보관 문제의 현실성 제고

개정 언론중재법이 인터넷신문과 인터넷포털사에게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영세한 인터넷 매체에게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배열 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우고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그러나 이 범주에 속하는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여전히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의무가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이라는 기준이 과연 현실적인지 보다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보관의 대상이 되는 기사 원본은 당연히 보관해야 하지만 배열기록에

19) 현행 '방송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기금관련조항이 시행되는 2011년 1월 1일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20) 현행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의 요건으로 취재인력 2인을 포함해서 3인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기사의 30퍼센트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것, 주간 단위로 내용을 업데이트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 보관의 경우 피해 구제시 필요한 영역에 한정시켜 보관범위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⑶ 피해 구제의 방법상의 가이드라인 필요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 청구문의 내용 · 크기 · 횟수 · 게재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해야 한다"(법 제2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이나 언론사닷컴, 인터넷포털사의 뉴스 기사는 오프라인상의 전통적인 신문이나 방송 매체의 기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 구제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시행방법이 오프라인 매체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게재 시간(duration), 게재 위치, 글자 크기와 자체(字體), 반론 보도문의 자수(字數)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기존의 매체와는 달리 인터넷기반 매체의 기사는 삭제가 가능하므로 인터넷기반 매체의 기사로 인한 피해자는 기사의 삭제 요청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21]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뉴스 매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단지 뉴스의 품질 문제뿐 아니라 유통 면에서의 파급효과 문제도 심각하다. 이는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이 송수신상의 물리적 거리나 시간적 제약을 극복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한번 올라온 글은 순식간에 확산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인터넷기반 매체로 인한 피해의 구제는 신속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프라인상의 신문이나 방송을 기준으로 정해진 현행 조정 · 중재 처리기간을 정보의 빠른 전달 능력을 지닌 인터넷에 걸맞게 단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기사는 계속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인터넷포털사가 정정 반론 추후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법 제17조의2 제1항)고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 구제가 신청된 기사는 기사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내리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22]

---

21) 이재진 · 구본권(2008),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한국방송학보』22권 3호, 172~212.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가 요청중인 경우,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가 있다.

⑷ 블로그의 저널리즘적 기능 증대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뉴스서비스”개념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인터넷 뉴스서비스에서 제외시켰다. 즉,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친목이나 교육 · 종교 목적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 등은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근 블로그가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개인 홈페이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해 올린 글이나 다른 인터넷기반 매체에서 스크랩해 올린 기사는 개정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블로그의 영향력은 초기 단계가 아니라 이미 성숙한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예를 들면, 지난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은 기존 언론 보도에 의해 촉발되어 블로그를 통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23] 앞으로 블로그 기사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⑸ 댓 글

매체의 속성상 피해자의 접근수단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오프라인상의 신문이나 방송 등에 비해 상호작용성이라는 기술적 특성을 지닌 인터넷기반 매체에서는 피해자가 댓글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은 인터넷 매체의 공론장 기능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한편 댓글과 관련하여 특정 기사와 연관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있는 댓글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 원 기사가 아닌 댓글에 의해 제3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행 언론중재법은 기사로 인한 피해만 구제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⑹ 인터넷포털사가 자체 생산한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 여부

인터넷포털사에서 자체 생산한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자체적인 지침을 정하지 않은 상

---

23) 김고은 (2008. 5.14). 네티즌, 더 이상 뉴스 소비자가 아니다: 행동하는 블로거, 정책검증에서 의제설정까지. 『PD 저널』제558호, 5.

24) 인터넷포털사 자체 생산 기사에 대한 조정 · 중재 사건은 현재까지 1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변희재 씨가 야후코리아의 ‘송지헌의 사람IN'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사건(2009 서울조정413)으로, 심리를 맡은 서울제6중재부는 인터넷포털사가 자체 제작한 해당 콘텐츠가 정식 뉴스보도 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태이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각 중재부의 개별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인터넷포털사의 자체제작 기사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24]

7. 결 어

언론중재제도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이다. 언론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은 자와 언론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제도는 분쟁의 최선책이라고 볼 수 있는 화해에 의한 명예로운 해결의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부는 직업법관 이외에도 언론계의 실정에 정통한 위원이라든가 독자층의 이익을 대변할 각계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어 언론과 피해자 쌍방을 이해시키는데 유리하고, 언론사 측의 입장에서는 곧바로 제소되기 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절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이나 소송절차상 번잡함이 없이 손쉽게 피해의 구제가 가능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과 개인용 컴퓨터의 대중화로 사회적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인터넷기반 매체로 인한 언론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 개정 언론중재법이 발효되었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발달된 의료기술로 질병을 치료받는 것 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상식이다. 평소 언론이 취재보도의 원칙을 준수하고, 갖가지 취재보도 상황에서 올바른 윤리적 판단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단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곧바로 법에 호소하기 보다는 언론기관과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모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언론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그림1] 메인화면에서 '뉴스' 항목 클릭

[그림2]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단계 구조의 최상위 화면

[표1] 2009년 8월 7일 언론중재법 개정 이후 매체 유형별 조정신청 처리 현황

(2009. 8. 7 ~ 2010. 2. 28)

	매체 유형	청구 건수	처리 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2009	신문	263	122	17	11		25	1		87(45)		70.2
	방송	333	26	2	5		6	226	1	67(24)		49.1
	잡지	5	5									100.0
	뉴스통신	18	6	2						10(9)		94.4
	인터넷신문	119	62	2	1		6	2		46(24)		75.2
	인터넷뉴스서비스	181	47	16	3		2	6	4	103(82)		84.8
	IPTV											
	기타	1	1									100.0
	계	920	269	39	20		39	235	5	313(184)		72.4
2010	신문	105	42				9	6		24(16)	24	77.3
	방송	19	8			1	5	2		1	2	57.1
	잡지	4	3				1					75.0
	뉴스통신	5						2		3(1)		33.3
	인터넷신문	111	32	2	2		6	21		36(29)	12	80.8
	인터넷뉴스서비스	263	6	17		5	3	13		165(115)	54	72.3
	IPTV											
	기타											
	계	507	91	19	2	6	24	44		229(161)	92	74.2

※ '취하' 칸의 괄호안의 숫자는 괄호 밖의 숫자 중에서 신청인이 언론사의 정정보도 · 반론보도를 전제로 형식상 취하한 사건 등을 의미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27.
일부개정 : 2009. 2. 6.
시　　행 : 2009. 8. 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1. "언론"이라 함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9.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0.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1.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3.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4.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라 함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6.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

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개정 2009.2.6>)

①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②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제5조의2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②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③ 제2항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④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2.6]

제6조 (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2.6〉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2.6〉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8조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2.6〉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 (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가 하고, 해당 중재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신설 2009.2.6〉

⑤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⑧ 제척·기피 또는 회피에 따라 중재부에 중재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여 해당 중재부를 보충한다. 〈신설 2009.2.6〉

제11조 (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09.2.6〉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중재위원회의 활동보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제12조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개정 2009.2.6〉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개정 2009.2.6〉

③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등이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9.2.6〉

⑥언론사등이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⑦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개정 2009.2.6〉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2절 조 정

제18조 (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이나 구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 (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9.2.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등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09.2.6〉

제23조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 재

제24조 (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2.6〉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2.6〉

④ 삭제〈2009.2.6〉

제25조 (중재결정의 효력 등 <개정 2009.2.6>)

①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개정 2009.2.6〉

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중재법」제36조를 준용한다.〈신설 2009.2.6〉

제4절 소 송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⑥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민사집행법」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2.6〉

⑦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9.2.6〉

⑧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2.6〉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2006. 6. 29.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것)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7조 (재판)

①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

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제28조 (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정보도청구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등이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등이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2.6〉

제29조 (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개정 2009.2.6>)

법원은 언론보도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제30조 (손해의 배상)

①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④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2.6〉

제31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2.6〉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 (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③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개정 2009.2.6〉

④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⑤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⑥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⑦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⑧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2.6〉

제33조 삭제 〈2009.2.6〉

제4장 벌 칙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9.2.6〉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 보관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9.2.6〉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2.29, 2009.2.6〉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부 칙 <제9425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매개에 대한 적용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도·매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제2조제10호의 언론사"를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안내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 02) 397 – 3114 법무상담팀 : 02) 397 – 3000, 3010, 3100, 팩스 : 02) 397 – 3089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 051) 759 – 7083~4 / 팩스 : 051) 759 – 7093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 053) 763 – 0020~1 / 팩스 : 053) 763 – 0242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 062) 676 – 0360~1 / 팩스 : 062) 676 – 0362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 042) 525 – 0778~9 / 팩스 : 042) 525 – 0768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6층 전화 : 031) 211 – 9027, 9022 / 팩스 : 031) 212 – 0223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 033) 255 – 2878~9 / 팩스 : 033) 255 – 2872
충북중재부	층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전화 : 043) 286 – 8083, 8081 / 팩스 : 043) 286 – 8084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 063) 288 – 0010, 0981 / 팩스 : 063) 288 – 098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전화 : 055) 263 – 1787, 1780 / 팩스 : 055) 263 – 1769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 064) 722 – 3328, 3352 / 팩스 : 064) 726 – 3201

MEMO

MEMO